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감정평가서번호 D42411-2-1801

건명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190-191 외 소재
부동산 감정평가

의뢰인 세화새마을금고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들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

Pacific Appraisal Co., Ltd



서울특별시 종로구 다산로 32(신당동, 남산타운5번상가 4층)

대표전화 : 02-514-8811 FAX : 02-514-8812



인증서번호 : P241122-D102

심의일자 : 2024-11-22

가격심의인증서

감정서 번호	D42411-2-1801	발의처	본사
감정평가액	—금오십사억이천이백육십사만일천팔백원整 (\$5,422,641,800.-)		
물건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190-191외		
평가목적	공매		
거래처	세화새마을금고	제출처	세화새마을금고
담당평가사	김태영		

※ 심사사항

- 감정평가 가격의 적정성
- 감정평가 대상물건의 기본적 사항의 확정
- 평가방법의 적정성
- 관련법규 및 제규정의 준수여부
- 기타 유의사항의 참작여부

심사의견
적정

본 감정평가서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심사운영규정의 심사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기에 가격심의 인증서를 발행합니다.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



(부 동 산) 감 정 평 가 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김태영)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

정해욱

(서명 또는 약속)



감정평가액 오십사억이천이백육십사만일천팔백원정 (₩5,422,641,800.-)

의뢰인	세화새마을금고		감정평가목적	공매 (승인번호 : P241122-D102)	
제출처	세화새마을금고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		감정평가조건	-	
목록표시근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일반건축물대장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참고사항	-		2024. 11. 20	2024. 11. 20	2024. 11. 20
감정평가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별	면적(m ²) 또는 수량	종별	면적(m ²) 또는 수량	단가
	토지	3,276	토지	3,276	-
	건물	2,792.46	건물	168.6	5,298,980,000
				2,623.86	123,661,800
			이	하	여
	합계				₩5,422,641,800
심사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제부도”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한 공매 목적의 감정평가입니다.

2. 감정평가 기준 및 근거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감정평가관계법규와 감정평가 이론에 근거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3.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3.1.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시장가치”란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합니다.

3.2. 감정평가 조건에 대한 검토

감정평가 조건은 없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4.1. 감정평가 관련 규정의 검토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 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 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③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④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정평가방식)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 ①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감정평가법인 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기준)

-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 ① 감정평가법인 등은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

- ① 감정평가법인 등은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4.2. 대상물건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주된 방법을 적용하여 원가방식에 의한 시산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원가방식에 의한 시산가액은 토지와 건물의 시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토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되,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건물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15조에 따라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하였습니다. 건물은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므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주된 방법으로 산정한 시산가액의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습니다.

4.3. 일괄·구분·부분감정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이유 및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5. 기준시점 결정 및 이유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합니다.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4년 11월 20일입니다.

6.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실지조사는 2024년 11월 20일에 실시하였습니다. 실지조사내용은 후첨 ‘토지 감정평가 요항표’, ‘건물 감정평가 요항표’, ‘건물이용상태 및 임대내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그 밖의 사항

- 시산가액 산정을 위한 단가는 유효숫자 둘째자리까지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곱미터(m^2)당 가격이 10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유효숫자 셋째자리까지 표시하였습니다.
- 본 감정평가는 공매를 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것으로 감정평가서는 담보목적 등 공매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당 법인의 책임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건 건물 일련번호(가,나,라)는 현황멸실 된 것으로 확인되어 감정평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본건 토지 일련번호(1,2) 및 건물(다,마)에 제시외 건물⑦(구조: 파이프조아크릴지붕, 이용상황: 창고, 면적: 13 m^2), ⑧(구조: 컨테이너박스, 이용상황: 창고, 면적: 12 m^2), ⑨(구조: 판넬조판넬지붕, 이용상황: 창고, 면적: 14 m^2), ⑩(구조: 컨테이너박스, 이용상황: 창고, 면적: 18 m^2), ⑪(구조: 컨테이너박스, 이용상황: 창고, 면적: 12 m^2)이 소재하나, 구조, 이용상황, 규모 및 철거의 용이성 등으로 보아 본건의 사용, 수익, 처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대상물건 개요

1. 토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면적(m ²)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 목	도로접면	형 상 지 세	2024년 개별공시지가 (원/m ²)
1	서신면 제부리 190-191	2,462	자연환경	상업용	대	소로각지	자루형 평지	728,200
2	서신면 제부리 190-207	814	자연환경	상업용	대	소로한면	세장형 평지	713,600

■ 공법상 제한사항

일련번호(1):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2023-03-28), 지구단위계획구역(2023-03-28), 소로1
류(폭 10m~12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연안육역<연안관리법>

일련번호(2):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2023-03-28), 지구단위계획구역(2023-03-28), 소로1
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연안육역<연안관리법>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건물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건축면적(m ²)		주용도	구 조	총 수	사용승인일
			연 면 적(m ²)	건폐율(%)				
가	서신면 제부리	190-191	199.77 534.33	- -	제1종,2종 근린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3층	2003.06.25. 현황멸실
나	서신면 제부리	190-191	259.2 1,555.2	- -	제1종,2종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철골조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	지하1층 / 지상5층	2005.06.01. 현황멸실
다	서신면 제부리	190-191	88.6 84	-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1층	2019.09.03.
라	서신면 제부리	190-207	199.77 534.33	- -	생활숙박시설 (관광펜션업)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3층	2003.06.25. 현황멸실
마	서신면 제부리	190-207	91.1 84.6	-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철골구조 평지붕	1층	2018.08.21

3. 감정평가 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주변 상황

3.1. 공부와 실제가 상이한 경우 및 그 내용

본건은 공부와 현황이 일치하며, 물적동일성이 인정됩니다.

3.2. 대상물건을 감정평가에서 제외하는 경우 및 그 내용

본건 건물 일련번호(가,나,라)는 현황멸실 된 것으로 확인되어 감정평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I. 감정평가액 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1. 거래사례

기호	소재지	토지면적(m ²)		용도지역	이용상황	거래일자	총거래금액(원)	[토지단가: 유효숫자 셋째(둘째) 자리 미만 반올림]	
		건물면적(m ²)	지 목					토지거래가액(원) ¹⁾	토지단가 (원/m ²)
ㄱ	서신면 제부리 190-158	321	자연환경	상업용	2024.08.30	810,000,000	1,700,000		
		329.6		대	1998.09.07	546,320,000			
ㄴ	서신면 제부리 190-94	636	자연환경	상업용	2024.03.04	1,180,000,000	1,850,000		
		-		대	-	1,180,000,000			
ㄷ	서신면 제부리 290-5	431.5	자연환경	전기타	2023.12.22	652,500,000	1,510,000		
		-		전	-	652,500,000			

[출처: KAIS,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감정평가사례

기호	소재지	토지면적(m ²)	용도지역	이용상황	기준시점	감정평가목적	토지단가 (원/m ²)	비고
				지 목				
a	서신면 제부리 190-191	2,462	자연환경	주상용 대	2023.07.14	담보	1,560,000	본건 담보 전례
b	서신면 제부리 190-94	636	자연환경	상업용 대	2024.02.27	담보	1,620,000	-
c	서신면 제부리 190-326	1,200	자연환경	상업용 대	2024.05.03	경매	1,590,000	-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1) 토지거래가액 = 총거래금액 - 건물추정가액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인근지역 가격수준

주위환경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접면	가격수준(원/m ²)	비고
해안 상가지대	자연환경	상업용	소로변	1,550,000~1,700,000원	-

4. 경매통계

구분	경기 화성시 2023년 11월 ~ 2024년 10월					
	낙찰가			낙찰건		
	총감정가	총낙찰가	낙찰가율(%)	총건수	낙찰건수	낙찰률(%)
상가	85,137,988,510	51,360,883,650	60.3	467	104	22.3
토지	124,868,530,358	87,905,113,748	70.4	596	191	32.0

[출처:인포케어]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V. 부동산 감정평가액 산출과정

1. 원가방식의 적용

1.1. 토지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1.1.1. 공시지가기준법의 적용

"공시지가기준법"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이하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합니다.

$$\text{공시지가기준법에 } = \begin{matrix} \text{비교표준지} \\ \text{의한 시산가액} \end{matrix} \times \begin{matrix} \text{시점수정} \\ \text{x} \end{matrix} \times \begin{matrix} \text{지역요인 비교} \\ \text{x} \end{matrix} \times \begin{matrix} \text{개별요인 비교} \\ \text{x} \end{matrix} \times \begin{matrix} \text{그 밖의 요인} \\ \text{보정} \end{matrix}$$

가. 비교표준지 선정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인근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비교표준지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에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표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공시기준일: 2024.01.01]

일련 번호	비교 표준지	소재지	지번	면적(m ²)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목	도로접면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m ²)
1, 2	A	서신면 제부리	190-47	353	자연환경	상업용	대	소로각지	세장형 평지	728,2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나. 시점수정

“시점수정”이란 공시기준일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시점으로 적정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점수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지가변동률로서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조사·발표되지 아니한 월의 지가변동률 추정은 조사·발표된 월별 지가변동률 중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월의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 지가변동률

비교표준지	지 역	용도지역	지가변동률(%)
A	경기도 화성시	자연환경보전지역	2024.01.01 ~ 2024.09.30 : 1.741
			2024.09.01 ~ 2024.09.30 : 0.198

■ 시점수정치 산정

일련 번호	비교 표준지	기 간	계 산 식	[시점수정치: 소수점 여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시점수정치
1, 2	A	2024.01.01 ~ 2024.11.20	(1 + 0.01741) x (1 + 0.00198 x 51/30)	1.02083

다. 지역요인 비교

“지역요인”이란 대상물건이 속한 지역의 가격수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사회적·경제적·행정적 요인을 말합니다. 지역요인 비교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지역의 표준적인 획지의 최유효이용과 대상토지가 있는 지역의 표준적인 획지의 최유효이용을 판정·비교하여 산정한 격차율을 적용하였습니다.

결 정 의 견	지역요인 비교치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상호 대등합니다.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라. 개별요인 비교

“개별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구체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물건의 고유한 개별적 요인을 말합니다. 개별요인 비교는 비교표준지의 최유효이용과 대상토지의 최유효이용을 판정·비교하여 산정한 격차율을 적용하였습니다.

■ 개별요인 비교항목 [상업지대]

조 건	항 목	세 항 목
가로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접근조건	상업지역중심 및 교통시설과의 편의성	상업지역중심과의 접근성 인근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환경조건	인근환경 자연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지반, 지질 등
	면적, 접면너비, 너비, 깊이, 형상 등	면적,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삼각지, 자루형획지
획지조건	방위, 고저 등 접면도로 상태	방위, 고저, 경사지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용적제한, 고도제한, 기타규제(입체이용제한 등)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 개별요인 비교치 산정

[개별요인 비교치: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일련 번호	비교 표준지	가로	접근	환경	획지	행정적	기타	개별요인 비교치
1	A	1.02	1.00	1.00	0.96	1.00	1.00	0.980
본건은 표준지대비 가로조건(본건 소로2면획지, 표준지 소로, 세로(가) 각지)로 우세하며, 획지조건(형상 및 면적 등)에서 종합적으로 열세합니다.								
2	A	1.00	1.00	1.00	0.97	1.00	1.00	0.970
본건은 표준지대비 획지조건(표준지 각지 등)에서 열세합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마. 그 밖의 요인 보정

“그 밖의 요인 보정”이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하여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 외에 대상토지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 보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 지역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나 감정평가사례 등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비교사례기준 비교표준지 가액과 기준시점 비교표준지 가액의 격차율을 기준으로 하되 인근지역 유사토지 가격수준과 경매통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text{그 밖의 요인 보정치} = \frac{\text{비교사례 토지단가}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 \times \text{개별요인}}{\text{비교표준지 공시지가} \times \text{시점수정}}$$

■ 비교사례 선정

비교사례는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사항,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하고 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가까이 있는 다음의 비교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구분	기호	소재지	토지면적(m ²)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 목	기준시점	감정평가목적	토지단가 (원/m ²)
평가 사례	C 190-326	서신면 제부리	1,200	자연환경	상업용 대	2024.05.03	경매	1,59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격차율 검토

[격차율: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절사]

구 분	비교사례 비교표준지	비교사례단가(원/m ²) 표준지공시지가(원/m ²)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출단가 (원/m ²)	격 차 율
비교사례 기준 비교표준지가액	C	1,590,000	1.01375	1.000	1.030	1,660,218	
기 준 시 점 비교표준지가액	A	728,200	1.02083	-	-	743,368	2.233

시점수정 화성시 자연환경보전지역 지가변동률 (2024.05.03 ~ 2024.11.20)

지역요인 비교사례와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상호 대등합니다.

산 출 내 역	가로	접근	환경	획지	행정적	기타	개별요인 비 교 치
개별요인	1.00	1.00	1.00	1.03	1.00	1.00	1.030

표준지는 비교사례대비 획지조건(각지 등)에서 우세합니다.

■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일련 번호	비 교 표준지	결 정 의 견	그 밖의 요인 보정치
1, 2	A	인근지역 유사 부동산의 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인근지역 가격수준, 경매통계 및 감정평가 목적 등을 종합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2.23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 적용단가

[적용단가: 유효숫자 셋째(둘째) 자리 미만 반올림]						
일련 번호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원/m ²)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	적용단가 (원/m ²)
1	728,200	1.02083	1.000	0.980	2.23	1,620,000
2	728,200	1.02083	1.000	0.970	2.23	1,610,000

■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정

일련 번호	적용단가(원/m ²)	사정면적(m ²)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원)
1	1,620,000	2,462	3,988,440,000
2	1,610,000	814	1,310,540,000
합계		3,276	5,298,98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1.2. 거래사례비교법의 적용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합니다. 비준가액이란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말합니다.

$$\text{비준가액} = \text{거래사례가격} \times \text{사정보정}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가치형성요인비교}$$

가. 거래사례 선정

■ 거래사례 선정 기준

- 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일 것
- ② 거래사정이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사례나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한 사례일 것
- ③ 기준시점으로부터 도시지역은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에 거래된 사례일 것
- ④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 일체로 거래된 경우에는 배분법의 적용이 합리적으로 가능한 사례일 것
- ⑤ 용도지역 등의 공법상 제한사항, 이용상황 및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할 것
- ⑥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가까이 있을 것

■ 거래사례 선정

거래사례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거래사례 중에서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에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거래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일련 번호	거래 사례	소재지	토지면적(m ²)	용도지역	이용상황	거래일자	총거래금액(원)	토지단가 (원/m ²)
			건물면적(m ²)					
	서신면 제부리		321					
190-158			329.6	자연환경	상업용 지 목	2024.08.30 사용승인일	810,000,000 토지거래가액(원)	1,700,000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 배분법에 의한 토지단가 산정

건물적용단가: 1,600,000원/m² X 25/50 ≈ 800,000원/m²(유효숫자 셋째(둘째) 자리 미만(이상) 절사)

건물추정가액: 800,000원/m² X 329.6m² = 263,680,000원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나.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거래사례에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반영되어 있거나 거래 당사자가 시장에 정통하지 않은 등 수집된 거래사례의 가격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의 적절한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정 의견	사정보정치
거래사례의 거래가격은 인근지역 가격수준을 참작할 때 정상적인 거래사례라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1.000

다. 시점수정

“시점수정”이란 거래사례의 거래시점과 대상물건의 기준시점이 불일치하여 가격수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거래사례의 가격을 기준시점의 가격수준으로 적정화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점수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지가변동률로서 거래사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조사·발표되지 아니한 월의 지가변동률 추정은 조사·발표된 월별 지가변동률 중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월의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 지가변동률

거래사례	지역	용도지역	지가변동률(%)
ㄱ	경기도 화성시	자연환경보전지역	2024.08.01 ~ 2024.08.31 : 0.196 2024.09.01 ~ 2024.09.30 : 0.198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시점수정치 산정

[시점수정치: 소수점 여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일련 번호	거래 사례	기 간	계 산 식	시점수정치
1, 2	ㄱ	2024.08.30 ~ 2024.11.20	(1 + 0.00196 x 2/31) x (1 + 0.00198) x (1 + 0.00198 x 51/30)	1.00548

라. 가치형성요인 비교

“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을 말합니다. “가치형성요인 비교”란 거래사례와 대상물건 간의 종별·유형별 특성에 따라 가치형성요인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이를 각각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가치를 개별화·구체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지역요인 비교

결정 의견	지역요인 비교치
거래사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상호 대등합니다.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개별요인 비교항목 [상업지대]

조 건	항 목	세 항 목
가로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접근조건	상업지역중심 및 교통시설과의 편의성	상업지역중심과의 접근성 인근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환경조건	인근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자연환경	지반, 지질 등
	면적, 접면너비, 너비, 깊이, 형상 등	면적,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삼각지, 자루형획지
획지조건	방위, 고저 등	방위, 고저, 경사지
	접면도로 상태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용적제한, 고도제한, 기타규제(입체이용제한 등)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 개별요인 비교치 산정

[개별요인 비교치: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일련 번호	거래 사례	가로	접근	환경	획지	행정적	기타	개별요인 비교치
1	ㄱ	1.00	1.00	1.00	1.03	1.00	1.00	1.030
본건은 거래사례대비 획지조건(본건 2면획지 등으로 우세하나 형상 및 면적 등 열세)에서 종합적으로 우세합니다.								
2	ㄱ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본건은 거래사례와 전반적으로 대등합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마.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 적용단가

[적용단가: 유효숫자 셋째(둘째) 자리 미만 반올림]

일련 번호	거래사례단가(원/m ²)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적용단가(원/m ²)
1	1,700,000	1.000	1.00548	1.000	1.030	1,760,000
2	1,700,000	1.000	1.00548	1.000	1.000	1,710,000

■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정

일련 번호	적용단가(원/m ²)	사정면적(m ²)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원)
1	1,760,000	2,462	4,333,120,000
2	1,710,000	814	1,391,940,000
합계		3,276	5,725,06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2. 건물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합니다. 적산가액이란 원가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말합니다.

$$\text{적산가액} = \text{재조달원가} - \text{감가수정액}$$

1.2.1. 재조달원가

“재조달원가”란 대상물건을 기준시점에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 데 필요한 적정원가의 총액을 말합니다. 재조달원가는 대상물건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하되, 제세공과금 등과 같은 일반적인 부대비용을 포함합니다. 재조달원가는 건물표준단가에 부대설비 내역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text{재조달원가} = \text{건물표준단가} + \text{부대설비보정단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가. 건물표준단가

건물표준단가는 정부고시 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순수 건축공사비에 제경비(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설계감리비 및 전기기본설비비(전등, 전열공사비)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분류번호	용 도	구조 및 지붕	급 수	표준단가(원/m ²)	내용년수
4-1-5-7	점포 및 상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	780,000	50 (45~55)
4-1-6-1	점포 및 상가	철골조 슬래브지붕	3	1,181,000	40 (35~45)
4-1-6-1	점포 및 상가	철골조 슬래브지붕	2	1,463,000	40 (35~45)
4-1-5-7	점포 및 상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	1,026,000	50 (45~55)
4-1-5-7	점포 및 상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	780,000	50 (45~55)
4-1-5-7	점포 및 상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	1,026,000	50 (45~55)
4-1-5-7	점포 및 상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	1,221,000	50 (45~55)

[출처: 「건물신축단가표」, 한국부동산원, 2023]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나. 부대설비 내역

부대설비란 건물표준단가에 포함되지 않은 전기설비, 위생설비, 냉난방설비 등을 의미합니다.

일련번호	전기	위생·급배수	냉난방	소화설비	자동제어	승강기	기타
다	0	0	-	-	-	-	-
마	0	0	-	-	-	-	-

다. 재조달원가 결정

『건물신축단가표』를 참고하여 감정평가 목적, 대상건물의 규모 및 구조, 사용자재의 품질 및 시공 방법, 용도, 부대설비 내역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재조달원가를 결정하였습니다.

일련 번호	총 구 조	용 도	재조달원가(원/m ²)
가	1~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감정평가 외
나	지1~5층 철골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노래연습장)	감정평가 외
다	1층 일반철골구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850,000
라	1~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숙박시설	감정평가 외
마	1층 일般철골구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85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2.2. 감가수정

“감가수정”이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감가수정을 할 때에는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한 정액법, 정률법, 또는 상환기금법 중에서 대상물건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되, 이에 따른 감가수정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리적·기능적·경제적 감가요인을 고려하여 관찰감가 등으로 조정하거나 다른 방법에 따라 감가수정할 수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 대상물건에 가장 적합한 정액법을 적용하되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여 감가수정하였습니다.

$$\text{감가누계액} = \text{재조달원가} \times (\text{경과연수} \div \text{내용연수})$$

일련 번호	총 층	용 도	재조달원가 (원/m ²)	경제적 내용연수(년)		경과연수(년)		감가율	감가누계액 (원/m ²)
				실제	유효	실제	유효		
가	1~3층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	-	-	-	-	-	감정평가 외
나	지1~5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노래연습장)	-	-	-	-	-	-	감정평가 외
다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850,000	40	5	5	5 / 40	106,250	
라	1~3층	숙박시설	-	-	-	-	-	-	감정평가 외
마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850,000	40	6	6	6 / 40	127,5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2.3. 원가법에 의한 시산가액

가. 적용단가

[적용단가: 유효숫자 셋째(둘째) 자리 미만 반올림]					
일련 번호	총 층	용 도	재조달원가(원/m ²)	감가누계액(원/m ²)	적용단가(원/m ²)
가	1~3층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	-	감정평가 외
나	지1~5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노래연습장)	-	-	감정평가 외
다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850,000	106,250	744,000
라	1~3층	숙박시설	-	-	감정평가 외
마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850,000	127,500	723,000

나. 원가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정

일련 번호	총 층	적용단가(원/m ²)	공부면적(m ²)	사정면적(m ²)	적산가액(원)
가	1~3층	-	534.33	-	감정평가 외
나	지1~5층	-	1,555.2	-	감정평가 외
다	1층	744,000	84	84	62,496,000
라	1~3층	-	534.33	-	감정평가 외
마	1층	723,000	84.6	84.6	61,165,800
합 계		-	2,792.46	168.6	123,661,8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3. 원가방식에 의한 시산가액

1.3.1. 토지 시산가액

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인근지역의 가격수준 및 경매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에 의해 합리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개별 감정평가에 의한 대상토지의 시산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련번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원)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원)	토지 시산가액(원)
1, 2	5,298,980,000	5,725,060,000	5,298,980,000
합 계	-	-	5,298,980,000

1.3.2. 건물 시산가액

재조달원가 및 감가수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원가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15조에 따라 원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개별 감정평가에 의한 대상건물의 시산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련번호	원가법에 의한 시산가액(원)	건물 시산가액(원)
다	62,496,000	62,496,000
마	61,165,800	61,165,800
합 계		123,661,8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3.3. 원가방식에 의한 시산가액 산정

구 분	원가방식에 의한 시산가액(원)
토 지	5,298,980,000
건 물	123,661,800
합 계	5,422,641,8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V. 감정평가액 결정

1. 부동산 감정평가액 결정 및 결정 의견

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인근지역의 가격수준 및 경매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원가방식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의거하여 원가방식에 의한 시산가액을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구 분	감정평가액(원)
토 지	5,298,980,000
건 물	123,661,800
합 계	5,422,641,800

2. 대상물건 감정평가액 결정

구 분	감정평가액(원)
부동산	5,422,641,800
합 계	5,422,641,800

(부동산)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	용도지역 구조	면적(m ²)		감정평가액		비고
					공부	사정	단가(원/m ²)	금액(원)	
1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190-191	대	자연환경	2,462	2,462	1,620,000	3,988,440,000	
가	동소 [도로명주소]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해안길 272	위지상	제1종 근린생활 시설 제가동호	철근콘크리트 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3층 1층 2층 3층	195.21 195.21 143.91	534.33	-	-	감정평가 외 현황멸실
나	동소	위지상	제1종, 제2종 근린생활 시설 및 단독주택 제나동호	철골조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 지붕 5층 지1층 1층 2층 3층 4층 5층	259.2 259.2 259.2 259.2 259.2 259.2	1,555.2	-	-	감정평가 외 현황멸실

(부동산)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	용도지역 구 조	면적(m ²)		감정평가액		비고
					공부	사정	단가(원/m ²)	금액(원)	
다	동소	위지상	제2종 근린생활 시설 다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1층 1층	84	84	744,000	62,496,000	850,000 x35/40
2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190-207	대	자연환경	814	814	1,610,000	1,310,540,000	
라	동소	위지상	생활숙박 시설 (관광 펜션업) 제에이동호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 지붕 3층 1층 2층 3층	195.21 195.21 143.91	534.33	-	-	감정평가 외 현황멸실
마	동소	위지상	제2종 근린생활 시설 비동	일반철골구조 평지붕 1층 1층	84.6	84.6	723,000	61,165,800	850,000 x34/40
합 계					이	하	여	백	₩5,422,641,800.-

(토 지) 감 정 평 가 요 항 표

지 리 적 위 치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소재 "제부도" 없음 내에 위치합니다.
주 위 환 경	본건 주위는 해안 상가지대로서 제반 입지여건은 보통합니다.
교 통 환 경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노선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소재하나 배차간격 등을 고려시 교통환경은 다소 불편합니다.
접 면 도 로	일련번호(1) : 본건 동측 및 서측으로 소로와 접합니다. 일련번호(2) : 본건 서측으로 소로 접합니다.
지세 및 형상	일련번호(1) :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 대비 등고평탄한 자루형평지입니다. 일련번호(2) :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 평지입니다.
이 용 상 태	일련번호(1,2) : 상업용 토지로 이용 중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공법상제한사항	일련번호(1) :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 · 휴양개발진흥지구(2023-03-28), 지구단위계획구역(2023-03-28), 소로1류(폭 10m~12m)(접합), 종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연안육역<연안관리법> 일련번호(2) :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 · 휴양개발진흥지구(2023-03-28), 지구단위계획구역(2023-03-28),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연안육역<연안관리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 일련번호(1,2) 및 건물(다,마)에 제시외 건물①(구조: 파이프조아크릴지붕, 이용상황: 창고, 면적: 13㎡), ②(구조: 컨테이너박스, 이용상황: 창고, 면적: 12㎡), ③(구조: 판넬조판넬지붕, 이용상황: 창고, 면적: 14㎡), ④(구조: 컨테이너박스, 이용상황: 창고, 면적: 18㎡), ⑤(구조: 컨테이너박스, 이용상황: 창고, 면적: 12㎡)이 소재하나, 구조, 이용상황, 규모 및 철거의 용이성 등으로 보아 본건의 사용, 수익, 처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건 물) 감 정 평 가 요 항 표

건물 구조 및 마감재	일련번호(다) :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지상 1층 건물로서, 외벽 : 판넬마감 등, 창호 : 강화유리 등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이 용 상 태	일련번호(다,마) : 근린생활시설으로 이용 중입니다.
부대설비 및 관리상태	일련번호(다,마) : 위생 · 급배수 · 급탕설비 및 전기설비 등이 있으며, 관리상태는 보통입니다.
부합물 및 종물	해당사항 없습니다.
임 대 관 계	후면 "건물이용상태 및 임대내역" 참조.
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가,나,라)는 현황 멀실되었습니다.
그 밖의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광역위치도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190-191 외



한국감정평가사협회
KOREA APPRAISAL & PROPERTY APPRAIS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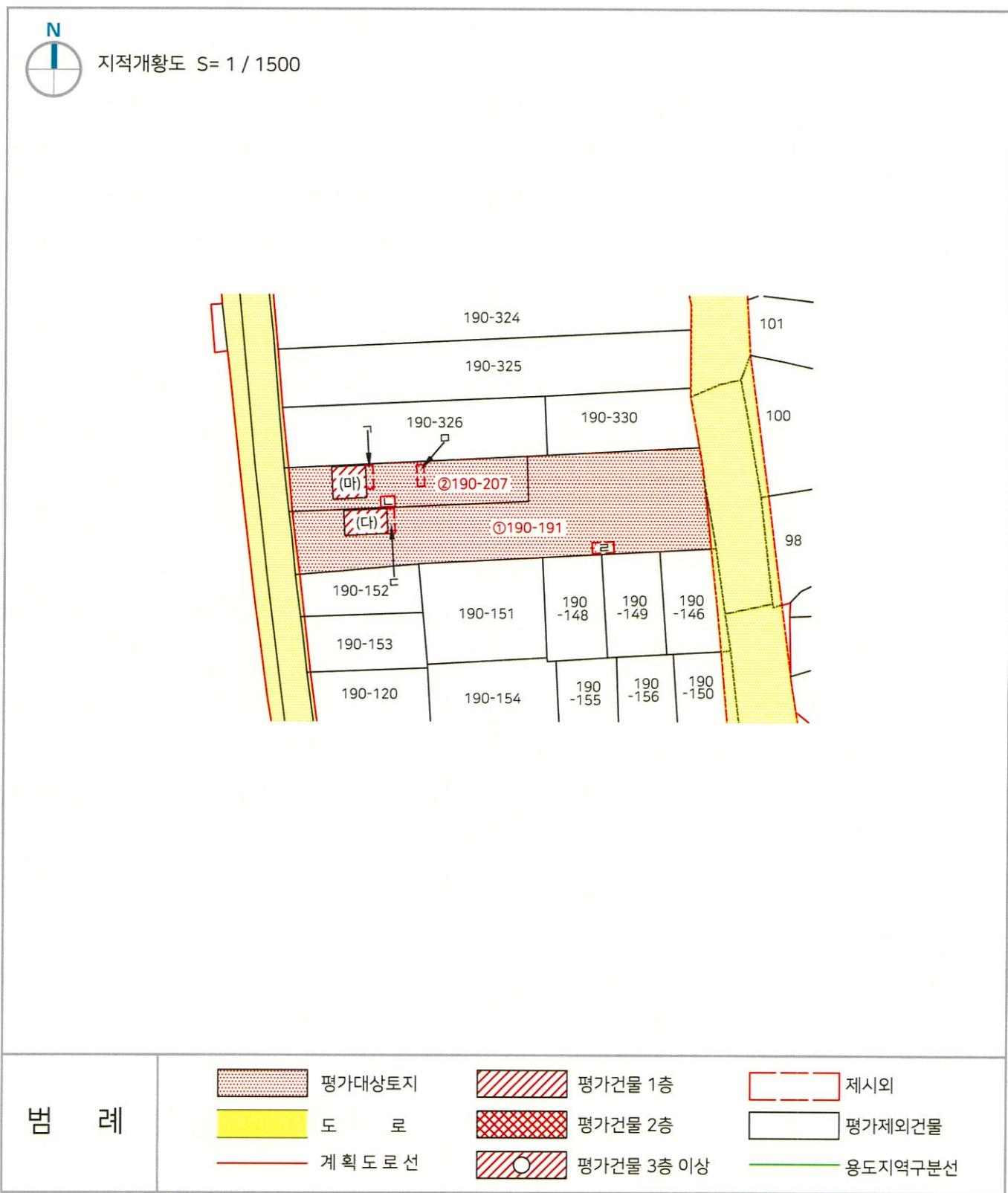
상세위치도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190-191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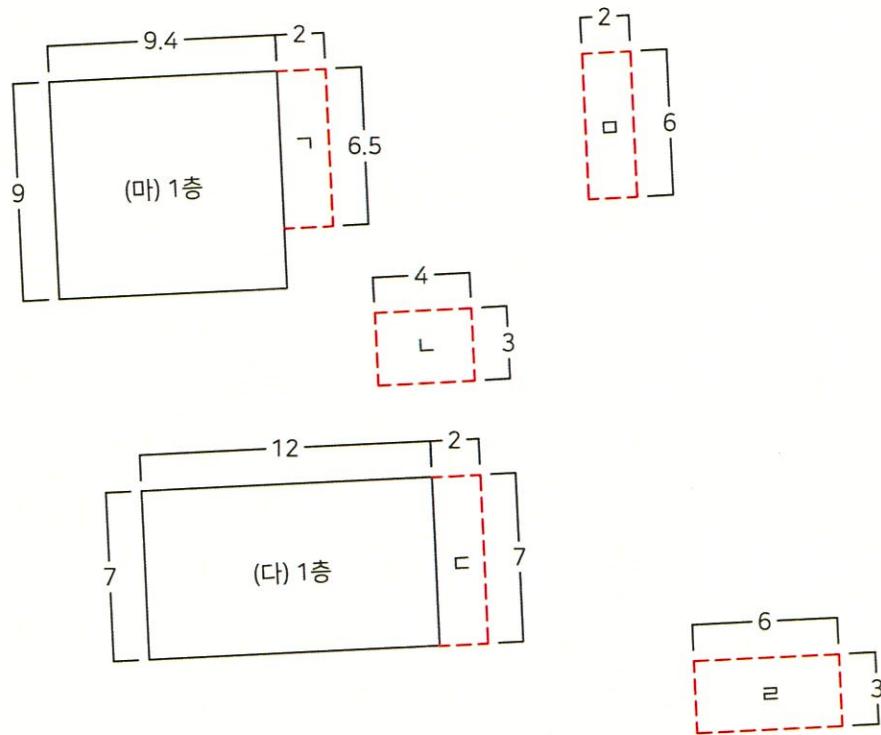
지적개황도



건물개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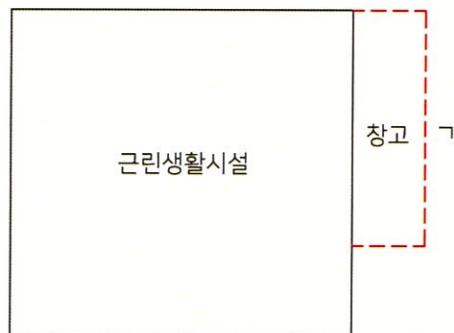
건물개황도 S= 1 /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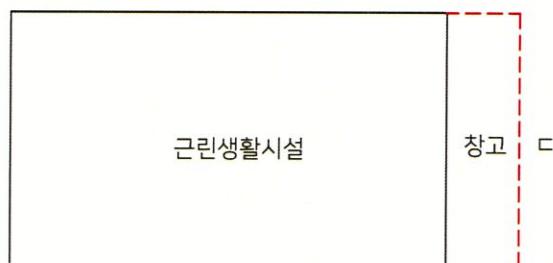
(면적산출근거)
 (다) 1층 : $12 \times 7 =$ 약 $84m^2$
 (마) 1층 : $9.4 \times 9 =$ 약 $84.6m^2$

— (제시외건물) —
 ㄱ : 파이프조, 아크릴지붕. (마) 1층(창고) 약 $13m^2$
 ㄴ : 컨테이너박스, 단층(창고) 약 $12m^2$
 ㄷ : 판넬조, 판넬지붕. (다) 1층(창고) 약 $14m^2$
 ㄹ : 컨테이너박스, 단층(창고) 약 $18m^2$
 ㅁ : 컨테이너박스, 단층(창고) 약 $12m^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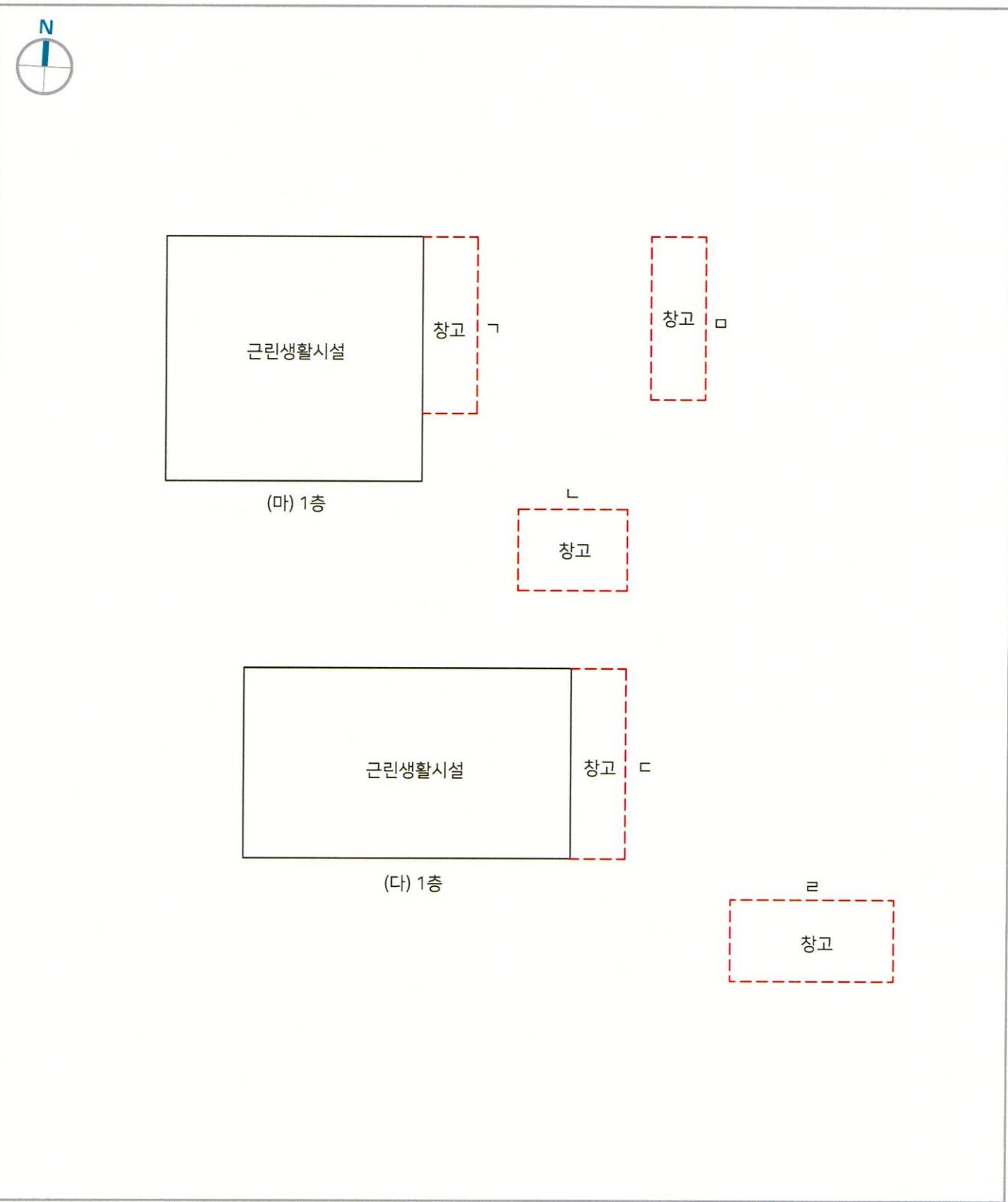
건물 이용 상태 및 임대 내역



(마) 1층



(다)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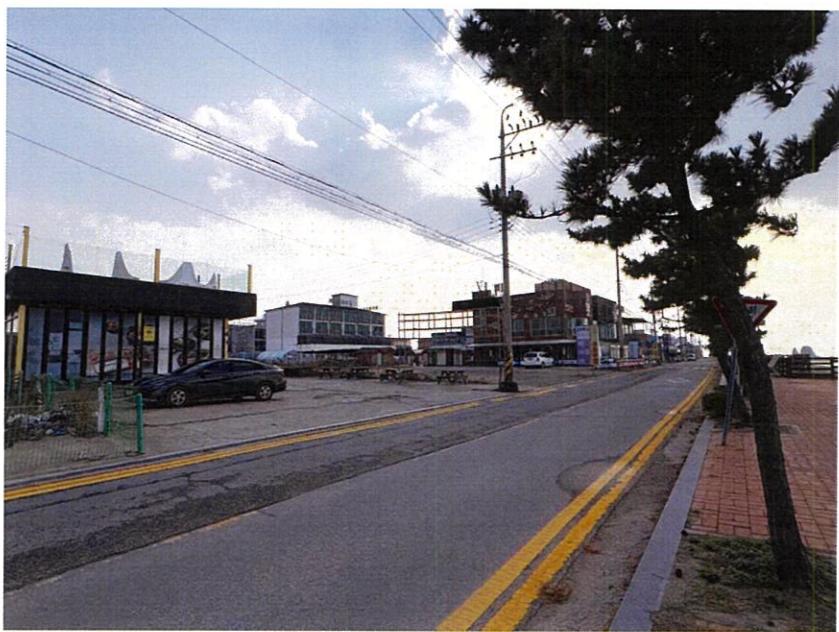
건물이용상태 및 임대내역

임대부분	상호명	임차인	임대내역		총 방수	사용 방수	비고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가) 1층~(가) 3층 전체			임	대	미	상	-
(나) 지1층 ~(나) 5층 전체			임	대	미	상	-
(다) 1층 전체			임	대	미	상	-
(라) 1층~(라) 3층 전체			임	대	미	상	-
(마) 1층 전체			임	대	미	상	-
- 이 하 여 백 -							
합 계							

사 진 용 지



본건 서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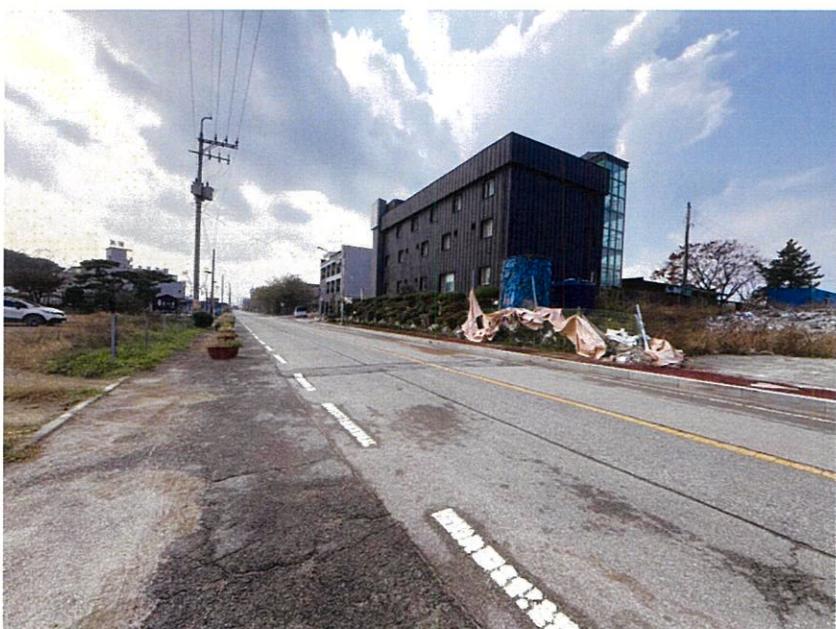


서측도로 주위전경

사 진 용 지



본건 동측 전경



동측도로 주위전경

사진용지



건물 기호(다)



건물 기호(마)

사 진 용 지



토지 일련번호(1,2)



제시외 ①

사진용지



제시외 ⓒ



제시외 ⓒ

사진용지



제시외 ⑩



제시외 ⑪